

제95회 학교운영위원회 안건발의서

화산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안건 번호	2024 - 29
----------	-----------

발의연월일 : 2024. 7. .

제 안 자 : 교장 박 희 상

담 당 자 : 교사 백 은 자

1. 제안 이유

- 가.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안내(유초등특수교육과-1575(2024.2.16.)),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계획 안내(민주시민교육과-2325(2024.3.6.)), 전북교육인권센터-1775(2024.3.25.)
- 나. 위 지침 및 교육활동 매뉴얼 적용에 따라 학교규칙 중 교외체험학습(가정체험학습) 승인사유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2. 개정 근거에 따른 학교규칙 세부 개정안(주요내용)

영역 (항목)	내용	학교규칙(기존)	학교규칙(개정안)	비고
제4장 교과 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 수료의 인정	제11조(수업운영 및 체험학습) ⑧ 수정	제11조(수업운영 및 체험학습) ⑧ 학생이 출석하여야~ 1. 천재지변, 감염병 등(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을 교외 체험학습 승인사유에 포함)	제11조(수업운영 및 체험학습) ⑧ 학생이 출석하여야~ 1. 천재지변, 감염병 등(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을 교외 체험학습 승인사유에 포함)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안내(유초등특수교육과-1575(2024.2.16.))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계획 안내(민주시민교육과-2325, 2024.3.6.)호
제12장 학교교권 보호위원 회	제41조 ~제59조 삭제	제12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41조(목적)~제59조(운영세칙)	제12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전체 삭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종료(전북교육인권센터-1775(2024.3.25.))

(별첨)

화산초등학교 학교규칙(안)

제정(2002.12.16. 제1호)
개정(2007.02.02. 제2호)
개정(2011.04.20. 제3호)
개정(2012.02.14. 제4호)
개정(2013.02.20. 제5호)
개정(2019.04.12. 제6호)
개정(2021.04.08. 제7호)
개정(2022.04.15. 제8호)
개정(2022.10.05. 제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교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화산초등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우리 학교는 화산초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우리 학교는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화산로 830(지번주소: 완주군 화평리 587)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 학년, 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단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5조(학년·학기) 학기는 매 학년도를 2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장이 정한 날 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 ①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② 우리 학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여름방학
 3. 겨울방학
 4. 개교기념일 : 4월 10일
 5. 학교장재량휴업일
 6. 기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기간

- ③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휴업 기간은 법정 수업일수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실시한다. 단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정하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 ④ 학교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한다.
- ⑤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수업을 하거나 실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⑥ 5항에 따라 학교행사가 개최되는 날을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으며, 그 수업일수만큼 제1항에 따른 휴업일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

제3장 학급편성 및 학생정원

제7조(학급편성) 학급편성은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통보하는 당해연도 학급편성 기준에 의하여 편성한다.

제8조(학생정원)

- ① 학생 정원은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 ② 학교장은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제4장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 수료의 인정

제9조(교육과정 편성 운영)

- ①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교육감이 제시한 ‘전라북도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 및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의 주요 계획을 반영하여 우리 학교 실정에 맞게 편성한다.
- ② 학교장은 매 학년 초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한다.

제10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 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 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한다.

제11조(수업운영 및 체험학습)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학교와 협동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 ④ 학생의 흥미, 특성과 계절 등을 고려하고 다양한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8조 및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의거 학교 간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⑤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의 보호자 등과 함께하는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국내·외 구분 없이 연간 15일 범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나,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으로 인한 초과 일은 학교장의 판단에 의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o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⑥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1달간의 학교(도·농)간 교환학습(위탁교육)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를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교환 및 위탁교육 수용교는 교환 및 위탁 기간중에 본인의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 ⑦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⑧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감염병 등(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을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포함)

2.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

3. 전출·입으로 인한 소요 일수

4.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교외체험학습: 연간 15일 이내, 개인 교환학습: 연간 1개월(4주) 이내, 단체 교환학습: 연간 2주일 이내)

5. 가족 및 친·인척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일수(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함)

6.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⑨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 일수의 2/3 이상으로 한다.

제12조(평가)

- ① 학교장은 학업성취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단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학교교육의 본질과 교육의 질적 접근이라는 차원에서 서열화를 조장하는 일제식 지필평가는 지양한다.
- ② 학교장은 평가항목, 평가시기,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3조(수료 및 졸업)

- ① 학교장은 본교 전 학년의 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 ②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 ④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제5장 취학의무 유예 및 면제

제14조(취학의무의 면제 등)

- ①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학교장이 의무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취학의무의 면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1. 질병 등으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
 2. 행방불명 중인 자
 3. 외국에서 취학하고 있는 자
 4. 기타 학교장이 면제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④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유예자의 학적관리)

- ① 학교장은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6장 입학·전학·편입학

제16조(입학 시기 및 편입학시기)

- ①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② 편·입학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7조(입학자격)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우리 학교 학구내 아동으로서 읍·면장이 발행하는 취학 통지를 받은 자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재외국민의 자녀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취학학교 변경 아동

제18조(취학학교의 변경)

- ①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우리 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 시키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② 학교장은 제1항에 의하여 입학을 승낙한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아동의 거주지 관할동(면)장에게 통보한다.

제19조(전학)

- ① 전학의 절차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0조(편입학)

- ① 외국체류 중 귀국한 아동의 편입학은 체류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한다.
- ②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편입학 아동은 학교장이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재외국민 자녀의 입학 절차 등)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서류신고증을 제출받음으로써 입학 또는 전입 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2조(조기진급.조기졸업)

- ①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수업연한의 단축은 1회(1년)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상급학교의 조기 입학에 대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을 한 것으로 본다.
- ③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거쳐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결정한다.
- ④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1학년부터 3학년, 2학년부터 4학년, 3학년부터 5학년, 4학년부터 6학년으로 조기 진급할 수 있다.
- ⑤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 조기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5학년 과정 이수 후 조기 졸업할 수 있다.

제23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 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평가 대상자의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3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는 4월 이내에 실시한다.

- ②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호 중 2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 교과목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 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픽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제24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선정 절차)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평가 대상자의 선정은 다음 절차를 따른다.

1.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 추천
2. 23조 ②항의 선정 기준 고려
3. 교무회의 심의
4. 학교장 선정

제25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평가)

- ① 학습 방법은 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조기 이수 해당 학년의 교사들의 지도 아래 대상 학생이 주도적이며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학교장은 조기 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 학생의 학습을 최대한 지원한다.
- ③ 조기 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는 진급 또는 상급학교 조기진학에 지장이 없는 기간 중에서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하되 가급적 11월 이내에 실시한다.
- ④ 조기진급 대상자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진급 대상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 대한 조기이수 인정을 받아야한다.
- ⑤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 교과목의 이수 기준은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가 정하는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중 과반 이상의 교과목에서 학업성취도가 만점의 80%를 넘어야 한다.
- ⑥ 과목 이수는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이수인정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 ⑦ 조기진급자가 진급학년에서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 사항이나 동의를 받아 다음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제26조(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 ① 제22조 ②항의 선정대상자 기준에 해당하여 상급학교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를 만족한 경우에 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 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 ③ 상급학교 조기입학 신청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 후 7일 이내에 교과목별 평가를 실시한다.
- ④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⑤ 상급학교 전형 응시 신청자를 대상으로 6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 대한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중 과반수의 교과목에서 학업성취도가 만점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 ⑥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 ⑦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합격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한다.

제27조(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

- ①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1. 위원회는 위원장 교감 1인을 포함하여 5~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위원회의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 3. 교사는 부장교사나 학년담임 교사 등을 포함한다.
- ②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인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한다.
- ④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 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 ⑤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⑥ 위원이 제④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8조(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의 역할)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교과목별 이수인정 기준의 결정
- 2.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방법의 결정
- 3.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 4.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 5.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와 관련된 업무

제29조(조기진급 등 대상자의 업무처리)

- ① 조기진급 등 대상자가 속한 학급의 담임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 정리, 성적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② 조기이수 대상자의 해당 학년 교과목의 성적 처리는 성적을 적지 않고 '이수인정'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이 규정 이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따로 결정한다.

제8장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신설)

제30조(목적)

-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초(중)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정 학년을 배정하기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세부규정을 제시함으로써, 학교에서의 면제·유예자의 편입학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함이다.
- ②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2004.2.17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업무의 관련 조항을 학칙에서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관계인의 이해를 돕고, 학교에서의 귀국자 편입학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함이다.

제31조(방침)

- ① 조기진급대상자 및 조기졸업자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와는 다른 별도의 세부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② 정원 외 관리자, 면제·유예 자가 재입학 또는 편입학하고자 할 때 정원외 관리나 면제·유예 당시의 학년으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령에 비해 매우 낮은 학년으로 배정될 수밖에 없어 학생, 보호자가 학교생활의 원만한 적응을 고려하여 연령에 맞는 학년으로 배정받기를 희망하여,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대상자로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정원 외 관리자, 면제·유예자 중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대상자의 선정은 의무교육대상자도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2/3이상을 출석해야 해당학년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학년진급을 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제·유예 자에 한하여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에서 신중히 결정한다.
- ④ 귀국자 편입학 시 서류심사를 할 수 있는 구비서류가 없거나 서류심사 결과 연령에 비해 매우 낮은 학년으로 배정되어 학교적응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실시한다.
- ⑤ 귀국자 중 교과이수인정평가에 의하여 학년을 배정하는 경우 국내에서 계속 수학한 학생들과 동등 또는 이하의 학년으로 배정한다.
- ⑥ 귀국자 편입학 시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고려하되, 국내 계속 수학 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대상자를 선별한다.
- ⑦ 귀국자 편입학 시 학제차이에 의한 경우가 아닌 학년의 누락, 중복이 있거나 총 수학기간이 부족한 특례대상자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에 의해 서류심사 시보다 학년을 높게 배정받는 경우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확인서를 받는다.

- ⑧ 해당 학년 학업 수행능력 판별의 적정성 제고를 위하여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타당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한다.

제32조(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위원회의 구성 : 교감, 교무담당교사, 연구담당교사, 학급담임교사
- ②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대상자 선정
 2.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기준 결정
 3.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및 성적산출
 4.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결과 학년 판정
 5. 기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와 관련된 업무

제33조(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 ①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절차
 1. 서류심사에 의하여 학년 판정
 2. 학생과 학부모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신청에 의하여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에서 서류심사결과를 검토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고려하여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 대상자 적격 여부 결정
 3.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4.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에서 인정기준에 의하여 학년 판정
 5. 학교장의 학년 결정

교과이수인정평가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서류심사에 의한 학년판정	학생·학부모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 신청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 위원회의 대상자 적격여부 판정 - 서류심사결과 검토 - 학생·학부모의 의견고려 - 학생의 정서 및 학교적응력 등 고려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실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학년 판정	학교장의 학년 결정

② (평가 대상)

1. 정원 외 관리자, 면제·유예 자 :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 중 교과이수인정평가를 희망하여 신청한 자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 대상자로 판정한 자에 한함)
2. 귀국자 : 서류심사 시 학제차이에 의한 경우가 아닌 학년 누락이나 학년 중복, 학업공백 등으로 국내 동급생과 같은 학년으로 배정될 수 없는 학생 중 교과이수인정평가를 희망하여 신청한 자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 대상자로 판정한 자에 한함)

③ 평가 교과목

1. 1~2학년 : 국어, 수학, 바른생활, 슬기로운생활
2. 3~6학년 :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④ 평가 방법

1. 정원 외 관리자, 면제·유예 자 : 지필평가
 2. 귀국자 :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는 지필평가로 하되, 면접이나 외국학교에서의 성적 등을 참고할 수 있음
- ⑤ 평가 내용 : 편입학하고자 하는 해당학년의 평가 교과목의 학업수행 기본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을 평가한다.
- ⑥ 평가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 평가도구는 평가 교과목 담당교사 2인 이상이 공동 제작하며 평가도구 제작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교과협의회에서 정한다.
- ⑦ 평가 시기 : 학교실정에 맞게 학교별로 결정
- ⑧ 평가 기준 : 해당 학년 인정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모든 교과목에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제34조(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대상자의 편입학 학년 결정)

- ①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학년을 판정한다.
- ②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판정결과에 의거 학교장이 편입학 학년을 결정한다.
- ③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기준에 미달된 자는 서류심사에 의한 배정 학년대로 학년을 결정한다.
- ④ 학년배정 결과를 1주일 이내에 해당 학생·학부모에게 통보한다.

제9장 학생의 포상과 징계

제35조(학생 포상과 징계 등)

- ①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 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 ② 교과발달이나 학교생활, 졸업식 등과 관련한 포상은 교육의 질적 접근 관점에서 지양한다. 단 우리 학교 교원들의 논의과정을 거쳐 학생 시상의 종류, 대상과 방법,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 ③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필요한 사항은 '화산생활인권규정'에 따른다.

제 10 장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제36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 ①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37조(학업중단속려제)

- ①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속려제 운영 방법(속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속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11장 학생의 자치활동의 조직과 운영

제38조(학생의 자치활동) 건전한 학생 문화를 조성하고,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길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전교 다모임(어린이회)을 조직, 운영한다.

제39조(학생자치회 조직)

- ① 전교 다모임은 다모임지기(회장) 6학년 1인, 부다모임지기(부회장) 5, 6학년 각 1인을 둔다.
- ② 학생자치회(전교다모임)의 조직(임원선출 등)과 관련한 사항은 학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40조(학생자치회의 운영)

- ① 학생 자치는 전교 다모임에서 운영 주제와 내용을 스스로 정하고, 담당교사의 지도(안내)하에 자율적으로 활동한다.
- ② 학교장은 학생자치회(전교다모임)의 운영(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재정을 학교 회계에 반영하여 지원한다.

제12장 학교규칙 개정

제41조(학칙개정 절차)

- ① 학칙은 교직원회의 논의 절차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개정한다.
- ② 학생이나 학부모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하거나 교직원회의, 전교 다모임, 학부모회의 등에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42조(시행 규칙)

- ①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 ② 학칙에 없는 사항은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 기타 지침, 훈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2002.12.16. 제1호)

- 1.(시행일) 본교의 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 2.(시행세칙) 본교의 학칙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2007.02.02. 제2호)

- 1.(시행일) 본교의 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 2.(시행세칙) 본교의 학칙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2011.04.20. 제3호)

- 1.(시행일) 본교의 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 2.(시행세칙) 본교의 학칙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2012.02.14. 제4호)

- 1.(시행일) 본교의 학칙은 2012.3.1부터 시행한다.
- 2.(시행세칙) 본교의 학칙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2013.3.1. 제 5호)

- 1.(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시행세칙) 본교의 학칙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2019. 4.12. 제 6호)

- 1.(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4. 8. 제 7호)

- 1.(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4. 15. 제 8호)

- 1.(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2.(시행세칙) 본교의 학칙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2022. 10. 5. 제 9호)

- 1.(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 2.(시행세칙) 본교의 학칙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2023. 4. 25. 제 10호)

- 1.(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2.(시행세칙) 본교의 학칙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2024. 3. 1. 제 11호)

- 1.(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시행세칙) 본교의 학칙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여름방학중 돌봄교실 특성화 프로그램 추가 개설(안)

안 건
번호

2024 - 30

발의년월일 : 2024. 07.

제 안 자 : 화산초등학교장

1. 제안이유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와 재능을 살려주기 위하여 여름방학중 돌봄교실에 특성화 프로그램을 추가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하기에 심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름방학중 돌봄교실 특성화프로그램 추가 개설

프로그램	대상학년	운영기간	시 간	장소	담당강사	예산
창의미술	1~6학년 (총 명)	2024.08.05. ~ 08.12.	월요일 (09:50~11:20)	돌봄 교실	김요나	35,000원*2시간*2회 =140,000원
놀이체육	1~6학년 (총 명)	2024.08.07. ~ 08.14.	수요일 (09:50~11:20)	강당	한은아	35,000원*2시간*2회 =140,000원
창의음악	1~6학년 (총 명)	2024.08.08. ~ 08.16.	목요일(09:50~11:20) 금요일(09:50~11:20)	돌봄 교실	이정아	35,000원*2시간*2회 =140,000원

끝.

화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개정(안)

안건 번호	2024 - 31
----------	-----------

발 의 일 자 : 2024. 7. .

제 안 자 : 화산초병설유치원장

1. 제안이유

- 「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고시 제2023-4호)」에 의거 유치원 학적사항을 법적 근거에 맞게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구 대조표 1부.

나. 화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개정안 1부. 끝.

화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신·구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 (휴업일)</p> <p>본원의 휴업일은 다음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경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 2. 하계·동계 방학 및 수료와 졸업 후 2월 말일까지 3. 개교기념일 4. 재량휴업일: 수업일수를 이수한 범위 내에서 원장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5. 임시휴업일: 비상재해, 유행성 전염병, 기타 긴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원을 명할 수 있다) 	<p>제6조 (휴업일)</p> <p>본원의 휴업일은 다음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경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 토요휴업일 2. 하계·동계 방학 및 수료와 졸업 후 2월 말일까지 3. 개교기념일 4. 재량휴업일: 수업일수를 이수한 범위 내에서 원장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5. 임시휴업일: 비상재해, 유행성 전염병, 기타 긴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원을 명할 수 있다)

화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개정안

개정 2023. 12. 26.

개정 2024. 07. 22.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유아를 교육하고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원은 화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라 칭한다.

제3조 (위치) 본 원은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화산로 830에 설치한다.

제2장 교육연한, 학기 및 휴업일

제4조 (수업연한) 본 원의 교육연한은 1~3년으로 한다.

제5조 (학기) 본 원의 학기는 2학기로 나누되 제 1학기는 3월1일부터 유치원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운동을 고려하여 유치원의 장이 정하는 날까지, 제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 (휴업일) 본 원의 휴업일은 다음 호와 같다.

1. 국경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 토요일휴업일
2. 하계·동계 방학 및 수료와 졸업 후 2월 말일까지
3. 개교기념일
4. 재량휴업일: 수업일수를 이수한 범위 내에서 원장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5. 임시휴업일: 비상재해, 유행성 전염병, 기타 긴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원을 명할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성 및 원아 정원

제7조 (학급편성) 학급편성은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통보하는 당해연도 학급 편성 기준에 의하여 편성한다.

제8조 (원아정원) 본 원의 원아 정원은 전라북도교육청 학급당 원아 수용지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교육내용 및 수업일수

제9조 (교육내용) 본 원의 교육내용은 교육부에서 고시한 누리과정을 중심으로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 경험, 자연탐구 영역으로 한다.

제10조 (수업일수) 본 원의 교육일수는 연180일 이상으로 한다.

제11조 (교육시간) 본 원의 하루 교육 시간은 교육과정은 4~5시간, 방과후과정은(기본과정 교육시간 포함 8시간 이상)을 운영한다.

제5장 입학·편입학·휴학·재입학·전학·퇴학·수료 및 졸업

제12조 (입학) 본 원의 입학은 다음 호와 같다.

1. 본 원에 입학할 수 있는 유아는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로 한다.
2. 신입 유아 선발은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운영하며 당해 연도 전라북도교육청 유아모집·선발계획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3. 입학 시기는 학급당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중도 입학이 가능하다.
4. 본 원에 입학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재입학/편입학/전입학) 본 원으로 재입학, 편입학, 전입학을 희망할 경우 유치원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한다.

제14조 (휴학) 본원의 휴학은 다음 호와 같다.

1. 질병 등 사유에 의해 휴학을 희망할 경우 원장은 휴원서를 받아 일정 기간 동안 교육과정 이수를 중단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2. 휴학은 학년도를 기준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할 수 있다. 휴학 기간이 종료되면 복학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자퇴/퇴학) 본원의 자퇴/퇴학은 다음 호와 같다.

1. 개인사정으로 자퇴를 희망할 경우 자퇴원서를 받아 처리한다.
2. 유아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때 원장은 퇴학을 명할 수 있다.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장기 결석할 때
 - ② 질병 및 기타 사유로 본인 및 타 유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16조 (졸업 및 수료) 원장은 유치원 수업일수 최종일(학년도 종료일)까지 학적을 보유한 유아에게 졸업장, 수료증을 수여한다.

제6장 납입금, 입학금 및 기타의 비용

제17조 (납입금, 입학금 및 기타의 비용) 본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 등은 누리과정 고시에

따른 학비지원으로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되 본원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기타비용은 필요시 학부모와 협의·결정하며 징수방법 및 절차 등은 유치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7장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제18조 (생활지도의 범위) 원장과 교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유치원의 학급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3.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행위
4.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5.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6.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7.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8. 유아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9.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유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제19조 (훈육) ① 원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말과 행동으로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유아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원장과 교원은 유아가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가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유아를 분리할 수 있다.

1. 교육을 실시하고 교실 내 다른 장소로 이동
 2. 1호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지속적으로 교육활동 방해 시 교실외 지정된 다른 장소(교무실 또는 원장실)로 분리한다.
 3. 지속적으로 교육 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유아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장과 교원은 보호자에게 알린다.
- ② 원장과 교원은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유아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2. 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할 수 없는 물품
3. 유아 또는 교직원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거나 교육활동 침해 소지가 있는 물품

제8장 규칙 개정

제20조 (규칙 개정)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본교 교직원 협의 후 개정 내용을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공시한다.

부 칙

1. 본 원칙은 202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안 안건명	2024학년도 화산초등학교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

안건 번호	2024 - 32
------------------	-----------

발의년월일 : 2024. 7. .
제안자 : 학교장
담당자 : 행정실

I. 제안이유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의거 2024학년도 화산초등학교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고자 함.

II. 주요내용

(단위:천원)

예산구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추경1회	630,794	292,789	338,005	115.4		
세입				세출		
장	관	금회	누계	정책사업	금회	누계
이전수입	지방교육행정기관이전수입	337,675	599,720	인적자원 운용	22,963	25,163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0	25,619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151,388	258,047
자체수입	행정활동수입	0	1,625	기본적 교육활동	49,196	87,366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330	3,830	선택적 교육활동	24,736	43,626
합 계		338,005	630,794	교육활동 지원	77,947	93,387
				학교 일반운영	11,775	121,705
				학교 재무활동	0	1,500
				합 계	338,005	630,794

III. 세부 사항

1. 세입 내역

가.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337,675천원

나. 전년도이월금: 330천원

- (주요항목) 초등 및 유치원 순세계잉여금

2. 세출 내역

가. 인적자원 운용: 22,963천원

- (주요항목) 유치원방과후과정정원외시간제기간제교원 인건비, 학습동아리운영

나.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151,388천원

- (주요항목) 학교급식운영, 학생 및 교직원 보건안전관리, 교육복지, 통학차량 운영비, 입학지원금운영

다. 기본적 교육활동: 49,196천원

- (주요항목) 교과활동지원, 체육교과활동, 특수교육교과활동, 유치원교과활동, 자율활동, 현장체험학습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라. 선택적 교육활동: 24,736천원

- (주요항목) 방과후학교운영, 돌봄교실운영,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독서활동 운영, 다문화교육운영

마. 교육활동 지원: 77,947천원

- (주요항목) 교무학사운영, 학생안전교육, 교육환경개선

바. 학교 일반운영: 11,775천원

- (주요항목) 부서기본운영, 병설유치원기본운영, 학교시설장비유지

붙임 2024학년도 화산초등학교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부.

2024 학년도

화산초등학교 회계 세입 · 세출 예산서 (안)

(1차추경예산)

화산초등학교

화산초등학교 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예산 총칙

예산구분 : 추경1회

예산안확정일자	2024-07-10	예산액	630,794,000
---------	------------	-----	-------------

제2024학년도 화산초등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세입·세출 각각 292,789,000원"을 "세입·세출 각각 630,794,000원"으로 한다.

세입 세출 예산 총괄

회계연도 : 2024
 예산구분 : 추경1회
 학 교 명 : 화산초등학교

(단위 : 천원)

예산구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추경1회	630,794		292,789		338,005		115.4	
세입					세출			
장	관	금회	누계	구성비(%)	정책사업	금회	누계	구성비(%)
이전수입	지방교육행정기관이전수입	337,675	599,720	95.1	인적자원 운용	22,963	25,163	4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0	25,619	4.1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151,388	258,047	40.9
자체수입	행정활동수입	0	1,625	0.3	기본적 교육활동	49,196	87,366	13.9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330	3,830	0.6	선택적 교육활동	24,736	43,626	6.9
					교육활동 지원	77,947	93,387	14.8
					학교 일반운영	11,775	121,705	19.3
					학교 재무활동	0	1,500	0.2

2024학년도 세입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1회

(단위 : 천원)

과 목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출기초(원)	비고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비목					
1. 이전수입					599,720	262,045	337,675		
1. 지방교육행정기관이전수입					599,720	262,045	337,675		
1.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수입					599,720	262,045	337,675		
1.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599,720	262,045	337,675		
1. 학교운영비전입금					232,495	203,205	29,290	유치원기본운영비 : 3,047,000원 * 1개교 = 3,047,000 초등기본운영비 : 26,243,000원 * 1개교 = 26,243,000	
2. 목적사업비전입금					367,225	58,840	308,385	학교무상급식비지원 : 14,601,000원 * 1개교 = 14,601,000 (성립전_1추)초등돌봄교실간식비 : 1,808,000원 * 1개교 = 1,808,000 (성립전_1추)학교급식운반차량운영비 : 2,450,000원 * 1개교 = 2,450,000 (성립전_1추)학교급식운반차량운영비 : 245,000원 * 1개교 = 245,000 (성립전_1추)직영통학버스운영비 : 7,354,000원 * 1개교 = 7,354,000 (성립전_1추)전세통학버스운영비 : 94,780,000원 * 1개교 = 94,780,000 (성립전_1추)전세통학버스운영비 : 330,000원 * 1개교 = 330,000 (성립전_1추)전세통학버스운영비 : 3,840,000원 * 1개교 = 3,840,000 (성립전_1추)초등돌봄전담사대체인건비 : 180,000원 * 1개교 = 180,000 (성립전_1추)초등돌봄전담사대체인건비 : 93,000원 * 1개교 = 93,000 (성립전_1추)초등돌봄교실운영비 : 3,000,000원 * 1개교 = 3,000,000 (성립전_1추)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비 : 2,000,000원 * 1개교 = 2,000,000 (성립전_1추)흡연예방금연실천학교운영비 : 600,000원 * 1개교 = 600,000 (성립전_1추)유치원방과후과정시간제기간제인건비 : 18,302,000원 * 1개교 = 18,302,000 (성립전_1추)유치원방과후과정시간제기간제4대보험기판부담금 : 2,273,000원 * 1개교 = 2,273,000 (성립전_1추)기초학력학습지원튜터운영비 : 4,200,000원 * 1개교 = 4,200,000 (성립전_1추)급식종사자대체인건비 : 3,734,000원 * 1개교 = 3,734,000 (성립전_1추)급식종사자대체인건비 : 2,529,000원 * 1개교 = 2,529,000 (성립전_1추)급식종사자대체인건비 : 1,925,000원 * 1개교 = 1,925,000 (성립전_1추)급식종사자대체인건비 : 2,587,000원 * 1개교 = 2,587,000 (성립전_1추)학교급식환경개선비 : 4,400,000원 * 1개교 = 4,400,000 (성립전_1추)전북예듀페이입학지원금 : 900,000원 * 1개교 = 900,000	

2024학년도 세입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1회

(단위 : 천원)

과 목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출기초(원)	비고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비목					
								(성립전_1추)다꿈사랑방학교운영비 : 2,500,000 2,500,000원 * 1개교 = 2,500,000	
								(성립전_1추)농어촌방과후학교운영비 : 5,500,000 5,500,000원 * 1개교 = 5,500,000	
								(성립전_1추)교원안심서비스운영비 : 407,000 원 * 1개교 = 407,000	
								(성립전_1추)유아학비지원금(방과후과정) : 297,000 297,000원 * 1개교 = 297,000	
								(성립전_1추)유아학비지원금(교육과정) : 594,000 594,000원 * 1개교 = 594,000	
								(성립전_1추)유치원방과후시간제기간제교사성 과상여금 : 1,388,000원 * 1개교 = 1,388,000	
								(성립전_1추)완주교육협력지구과제별운영비 : 6,000,000 6,000,000원 * 1개교 = 6,000,000	
								(성립전_1추)학교예술교육지원사업비 : 5,000,000 5,000,000원 * 1개교 = 5,000,000	
								(성립전_1추)유아학비지원금(교육과정) : 150,000 150,000원 * 1개교 = 150,000	
								(성립전_1추)유초연계이음학기시범운영비 : 2,600,000 2,600,000원 * 1개교 = 2,600,000	
								(성립전_1추)유초연계이음학기시범운영비 : 6,600,000 6,600,000원 * 1개교 = 6,600,000	
								(성립전_1추)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비 : 3,220,000 3,220,000원 * 1개교 = 3,220,000	
								(성립전_1추)현장체험학습지원비 : 6,600,000 원 * 1개교 = 6,600,000	
								(성립전_1추)학교스포츠클럽활동비 : 700,000 원 * 1개교 = 700,000	
								(성립전_1추)우수농축산물부식지원비 : 786,000 786,000원 * 1개교 = 786,000	
								(성립전_1추)우수농축산물부식지원비 : 750,000 750,000원 * 1개교 = 750,000	
								(성립전_1추)친환경농산물지원비 : 2,624,000 원 * 1개교 = 2,624,000	
								(성립전_1추)친환경농산물지원비 : 3,083,000 원 * 1개교 = 3,083,000	
								(성립전_1추)탄소중립실천학급운영비 : 1,500,000 1,500,000원 * 1개교 = 1,500,000	
								(성립전_1추)두드림학교운영비 : 3,840,000 * 1개교 = 3,840,000	
								(성립전_1추)교과보충프로그램운영비 : 4,050,000 4,050,000원 * 1개교 = 4,050,000	
								(성립전_1추)수업나눔공동체운영비 : 1,000,000 1,000,000원 * 1개교 = 1,000,000	
								(성립전_1추)유아학비지원금 : 450,000원 * 1 개교 = 450,000	
								(성립전_1추)특수교육대상학생방과후학교운영 비 : 900,000원 * 1개교 = 900,000	
								(성립전_1추)스마트칠판및칠판장보급사업비 : 40,000,000 40,000,000원 * 1개교 = 40,000,000	
								(성립전_1추)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비 : 360,000 360,000원 * 1개교 = 360,000	
								(성립전_1추)여학생위생용품지원비 : 360,000 원 * 1개교 = 360,000	
								(성립전_1추)초등돌봄교실환경개선비 : 3,275,000 3,275,000원 * 1개교 = 3,275,000	

2024학년도 세입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1회

(단위 : 천원)

과 목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출기초(원)	비고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비목					
								(성립전_1추)체험중심안전교육비 : 1,100,000 원 * 1개교 = 1,100,000	
								(성립전_1추)유아학비지원금(교육과정) : 900,000원 * 1개교 = 900,000	
								(성립전_1추)유아학비지원금(방과후과정) : 450,000원 * 1개교 = 450,000	
								(성립전_1추)유아학비추가지원금(교육과정) : 150,000원 * 1개교 = 150,000	
								방과후교실맞학급교실환경개선비 : 25,400,000 원 * 1개교 = 25,400,000	
								(성립전_1추)급식종사자폐암검진비 : 390,000 원 * 1개교 = 390,000	
								1학년교과보충프로그램운영비 : 210,000원 * 1 개교 = 210,000	
								(성립전_1추)유치원한시적방과후과정지원금 : 720,000원 * 1개교 = 720,000	
								(성립전_1추)늘봄실무사사무환경지원비 : 2,400,000원 * 1개교 = 2,400,000	
2. 자체수입					27,244	27,244	0		
1. 학부모부담수입					25,619	25,619	0		
1. 수익자부담수입					25,619	25,619	0		
1. 급식비					25,619	25,619	0		
1. 급식비					25,619	25,619	0		
2. 행정활동수입					1,625	1,625	0		
1. 사용료및수수료					300	300	0		
1. 사용료및수수료					300	300	0		
1. 사용료					300	300	0		
2. 기타행정활동수입					1,325	1,325	0		
1. 이자수입					1,000	1,000	0		
1. 이자수입					1,000	1,000	0		
2. 기타행정활동수입					325	325	0		
1. 기타행정활동수입					325	325	0		
3. 기타수입					3,830	3,500	330		
1. 전년도이월금					3,830	3,500	330		
1. 순세계잉여금					3,830	3,500	330		
1. 순세계잉여금					3,830	3,500	330		
1. 순세계잉여금					3,830	3,500	330	초등순세계잉여금 : -504,000원*1교=	-504,000

2024학년도 세입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1회

(단위 : 천원)

과 목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출기초(원)	비고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비목					
								유치원순세계잉여금 : 834,000원*1교= 834,000	
세입합계					630,794	292,789	338,005		

2024학년도 세출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1회

(단위 : 천원)

사업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원)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1. 인적자원 운용					25,163	2,200	22,963	
1. 기타 교직원보수					22,263	300	21,963	
1. 교직원대체인건비					22,263	300	21,963	
1. [유]유치원방과후과정정원외 시간제기간제인건비					22,263	300	21,963	
1. 기간제교원인건비					19,990	300	19,690	(성립전_1추)인건비 : 3,050,300원*1명*6 월= 18,302,000
								(성립전_1추)성과상여금 : 1,387,730원*1 명*1회= 1,388,000
2. 기간제교원법정부담금					2,273	0	2,273	(성립전_1추)4대보험기관부담금 : 378,700 원*1명*6월= 2,273,000
2. 교직원 복지 및 역량강화					2,900	1,900	1,000	
1. 교직원역량강화					2,500	1,500	1,000	
1. [초]직무연수					1,500	1,500	0	
1. 일반수용비					1,500	1,500	0	
2. [초]학습동아리운영					1,000	0	1,000	
1. 일반수용비					300	0	300	(성립전_1추)수업연구교재및물품구입(목 적) : 150,000원*2회= 300,000
2. 운영수당					200	0	200	(성립전_1추)강사비(목적) : 200,000원*1 회= 200,000
3. 목적사업업무추진비					500	0	500	(성립전_1추)협의회비(목적) : 100,000원 *5회= 500,000
2. 교직원복지					400	400	0	
1. [초]교직원퇴임식					400	400	0	
1. 교직원복지비					400	400	0	
2.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258,047	106,659	151,388	
1. 급식 관리					125,663	85,559	40,104	
1. 학교급식운영					125,663	85,559	40,104	
1. [초]급식재료구입비					96,168	74,324	21,844	
1. 급식용식재료비					96,168	74,324	21,844	(성립전_1추)식품비 : 786,000원*1회= 786,000
								(성립전_1추)식품비 : 3,083,000원*1회= 3,083,000
								(성립전_1추)식품비 : 750,000원*1회= 750,000
								(성립전_1추)식품비 : 2,624,000원*1회= 2,624,000
								식품비 : 7,300,500원*2회= 14,601,000
2. [초]급식운영비					11,125	10,735	390	

2024학년도 세출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1회

(단위 : 천원)

사업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원)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1. 일반수용비	5,735	5,735	0	
				2. 연료비	5,000	5,000	0	
				3. 교직원복지비	390	0	390	(성립전_1추)급식종사자폐암검진비(목적) : 130,000원*3명= 390,000
				3.[초]급식기구확충비	4,900	500	4,400	
				1. 비품구입비	4,900	500	4,400	(성립전_1추)전기식부침기구입(목적) : 4,400,000원*1대= 4,400,000
				4.[초]대체인건비	10,775	0	10,775	
				1. 기간제근로자인건비	9,857	0	9,857	(성립전_1추)급식종사자대체인건비 : 2,326,000 2,326,000원*1명*1월= 2,326,000 (성립전_1추)급식종사자대체인건비 : 2,326,000 2,326,000원*1명*1월= 2,326,000 (성립전_1추)급식종사자대체인건비 : 1,665,000 1,665,000원*2명*1월= 3,330,000 (성립전_1추)급식종사자대체인건비 : 1,875,000 1,875,000원*1명*1월= 1,875,000
				2. 기간제근로자법정부담금	918	0	918	(성립전_1추)4대보험기관부담금 : 261,000 원*1명*1월= 261,000 (성립전_1추)4대보험기관부담금 : 202,000 원*2명*1월= 404,000 (성립전_1추)4대보험기관부담금 : 50,000 원*1명*1월= 50,000 (성립전_1추)4대보험기관부담금 : 203,000 원*1명*1월= 203,000
				5.[초]급식차량운영비	2,695	0	2,695	
				1. 일반수용비	1,121	0	1,121	(성립전_1추)운영용품비 : 245,000원*1회= 245,000 (성립전_1추)운영용품비 : 50,000원*8회= 400,000 (성립전_1추)차량수리비 : 238,000원*2회= 476,000
				2. 연료비	734	0	734	(성립전_1추)차량유류비 : 1,630원*30ℓ *15회= 734,000
				3. 기타공공요금	500	0	500	(성립전_1추)보험료, 자동차세 : 250,000원 *2회= 500,000
				4. 비품구입비	340	0	340	(성립전_1추)차량비품비 : 340,000원*1종= 340,000
				2. 보건관리	19,788	18,828	960	
				1.[국고]학생및교직원보건안전관리	6,690	5,730	960	
				1.[초]응급학생후송비	100	100	0	
				1. 학생복지비	100	100	0	
				2.[초]학생건강검사	1,030	1,030	0	
				1. 학생복지비	1,030	1,030	0	
				3.[초]보건실운영	4,960	4,600	360	

2024학년도 세출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1회

(단위 : 천원)

사업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원)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1. 교육운영비		1,200	1,200	0	
			2. 학생복지비		3,160	2,800	360	(성립전_1추)여학생위생용품구입(목적) : 20,000원*18개= 360,000
			3. 비품구입비		600	600	0	
			4. [국고][초](국고)흡연예방금 연실천학교운영		600	0	600	
			1. 교육운영비		600	0	600	(성립전_1추)흡연예방체험부스운영 : 600,000원*1회= 600,000
			2. 학교환경위생관리		13,098	13,098	0	
			1. [초]먹는물관리		6,668	6,668	0	
			1. 일반수용비		6,668	6,668	0	
			2. [초]공기질측정		5,780	5,780	0	
			1. 일반수용비		5,780	5,780	0	
			3. [초]방역관리		650	650	0	
			1. 일반수용비		650	650	0	
			3. 학생복지		112,596	2,272	110,324	
			1. 교육복지우선		2,000	0	2,000	
			1. [초]교육복지사업 운영비		2,000	0	2,000	
			1. 운영수당		1,500	0	1,500	(성립전_1추)개인상담강사비 : 50,000원 *30회= 1,500,000
			2. 교육운영비		500	0	500	(성립전_1추)맞춤형물품지원비 : 50,000원 *2명*2회= 200,000 (성립전_1추)사제멘토링운영비 : 60,000원 *5개반= 300,000
			2. 학생복지운영		110,596	2,272	108,324	
			1. [초]졸업앨범제작		3,220	2,100	1,120	
			1. 학생복지비		3,220	2,100	1,120	졸업앨범제작 : 70,000원*16권*1회= 1,120,000
			2. [초]학생교과서구입		172	172	0	
			1. 교육운영비		172	172	0	
			3. [초]통학차량(임차)운영		106,304	0	106,304	
			1. 일반수용비		96,510	0	96,510	(성립전_1추)차량수리및운영용품비 : 330,000원*1회= 330,000 (성립전_1추)차량수리및운영용품비 : 100,000원*2회= 200,000 (성립전_1추)전기차안전관리대행수수료 : 100,000원*12월= 1,200,000 (성립전_1추)전세통학버스임차료 : 3,949,160원*2대*12월= 94,780,000

2024학년도 세출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1회

(단위 : 천원)

사업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원)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2. 전기요금	4,754	0	4,754	(성립전_1추)전기차충전요금 : 396,100원 *12월= 4,754,000
				3. 기타공공요금	2,400	0	2,400	(성립전_1추)보험료, 자동차세, 통신비등 : 100,000원*12회= 1,200,000
								(성립전_1추)전세통학버스통신비 : 50,000 원*2대*12월= 1,200,000
				4. 비품구입비	2,640	0	2,640	(성립전_1추)전세통학버스단말기구입 : 1,320,000원*2대= 2,640,000
				4. [초]입학지원금운영	900	0	900	
				1. 학생복지비	900	0	900	(성립전_1추)입학지원금(목적) : 300,000 원*3명= 900,000
			3. 기본적 교육활동		87,366	38,170	49,196	
			1. 교과 활동		46,341	22,470	23,871	
			1. 교과활동지원		18,040	4,820	13,220	
				1. [초]학습준비물구입	2,840	1,920	920	
				1. 학습준비물	2,840	1,920	920	학습준비물구입 : 40,000원*23명*1회= 920,000
				2. [초]보결수업관리	800	800	0	
				1. 기타수당	800	800	0	
				3. [초]기초학력지도	10,140	2,100	8,040	
				1. 운영수당	8,750	2,100	6,650	(성립전_1추)학습지원튜터강사비(목적) : 35,000원*120시간= 4,200,000
								(성립전_1추)두드림강사비(목적) : 35,000 원*70시간= 2,450,000
				2. 교육운영비	690	0	690	(성립전_1추)두드림교재및교구구입(목적) : 150,000원*1회= 150,000
								(성립전_1추)두드림학생간식비(목적) : 17,100원*10회= 171,000
								(성립전_1추)두드림통합진단검사비(목적) : 369,000원*1회= 369,000
				3. 학생복지비	700	0	700	(성립전_1추)두드림상담치료및기타지원비 (목적) : 100,000원*7회= 700,000
				4. [초]교과보충프로그램운영	4,260	0	4,260	
				1. 기타수당	3,990	0	3,990	(성립전_1추)내부강사비(목적) : 30,000원 *3명*42시간= 3,780,000
								내부강사비(목적) : 30,000원*1명*7시간= 210,000
				2. 교육운영비	270	0	270	(성립전_1추)학습자료및간식구입비(목적) : 90,000원*3개반= 270,000
			2. 과학 교과활동		2,800	2,800	0	
				1. [초]학습준비물지원	2,800	2,800	0	
				1. 학습준비물	2,800	2,800	0	
			3. 체육 교과활동		1,200	2,120	-920	

2024학년도 세출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1회

(단위 : 천원)

사업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원)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1.[초]교과운영		1,200	2,120	-920	
			1.교직원복지비		200	0	200	체육교사피복비 : 200,000원*1명*1회= 200,000
			2.교육운영비		1,000	2,120	-1,120	승마체험활동비 : -32,000원*35명= -1,120,000
			4.특수교육교과활동		3,400	2,500	900	
			1.[초]교과운영		1,500	2,000	-500	
			1.교육운영비		1,500	1,500	0	
			2.비품구입비		0	500	-500	비품구입 : -500,000원*1종*1회= -500,000
			2.[초]학습준비물지원		1,000	500	500	
			1.학습준비물		1,000	500	500	학습준비물구입 : 50,000원*2종*5회= 500,000
			3.[초]특수교육대상자방과후학 교운영		900	0	900	
			1.교육운영비		900	0	900	(성립전_1추)외부방과후학교운영비(목적) : 100,000원*1명*9월= 900,000
			5.유치원 교과활동		20,901	10,230	10,671	
			1.[유]교과운영		8,430	7,930	500	
			1.기타수당		800	800	0	
			2.교육운영비		6,630	6,130	500	크리스마스선물및행사용품구입 : 100,000 원*5명*1회= 500,000
			3.도서구입비		1,000	1,000	0	
			2.[유]학습준비물지원		880	300	580	
			1.학습준비물		880	300	580	학습준비물구입 : 58,000원*10종*1회= 580,000
			3.[유]누리과정지원		2,991	0	2,991	
			1.교육운영비		2,991	0	2,991	(성립전_1추)방과후과정운영 : 50,000원*3 명*3월= 450,000 (성립전_1추)방과후과정운영 : 50,000원*3 명*1월= 150,000 (성립전_1추)방과후과정운영 : 49,460원*3 명*2월= 297,000 (성립전_1추)교육과정운영 : 50,000원*1명 *3월= 150,000 (성립전_1추)교육과정운영 : 116,600원*3 명*3월= 1,050,000 (성립전_1추)교육과정운영 : 100,000원*3 명*1월= 300,000 (성립전_1추)교육과정운영 : 98,920원*3명 *2월= 594,000
			4.[유]자율선택과제		2,000	2,000	0	
			1.교육운영비		1,800	2,000	-200	자율선택과제운영 : -200,000원*1명*1회= -200,000

2024학년도 세출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1회

(단위 : 천원)

사업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원)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2. 목적사업업무추진비	200	0	200	자율선택과제협의회비 : 100,000원*2회= 200,000
				5.[유]유초연계이음학기시범운영(유)	6,600	0	6,600	
				1. 일반수용비	800	0	800	(성립전_1추)교원및학부모연수비(목적) : 400,000원*2회= 800,000
				2. 교육운영비	5,140	0	5,140	(성립전_1추)코앤코음악외5종체험비(목적) : 80,000원*5종*10회= 4,000,000 (성립전_1추)텃밭가꾸기외재료비(목적) : 22,800원*10명*5회= 1,140,000
				3. 목적사업업무추진비	660	0	660	(성립전_1추)협의회비(목적) : 165,000원*4회= 660,000
			2. 창의적 체험활동		41,025	15,700	25,325	
			1. 자율활동		23,925	7,100	16,825	
				1.[초]학생회활동지원	2,000	2,000	0	
				1. 학생복지비	2,000	2,000	0	
				2.[초]학급교육활동경비	3,500	3,500	0	
				1. 교육운영비	3,500	3,500	0	
				3.[초]체육대회	2,120	1,000	1,120	
				1. 교육운영비	2,120	1,000	1,120	행사용품구입 : 112,000원*10종*1회= 1,120,000
				4.[초]미술프로젝트	2,105	0	2,105	
				1. 운영수당	2,100	0	2,100	(성립전_1추)강사비(목적) : 35,000원*57시간= 1,995,000 강사비 : 35,000원*3시간= 105,000
				2. 교육운영비	5	0	5	(성립전_1추)간식비(목적) : 5,000원*1회= 5,000
				5.[초]생태전환교육	1,000	0	1,000	
				1. 교육운영비	1,000	0	1,000	(성립전_1추)모종및물품구입(목적) : 200,000원*5회= 1,000,000
				6.[초]뮤지컬프로젝트	3,500	0	3,500	
				1. 운영수당	2,940	0	2,940	(성립전_1추)강사비(목적) : 35,000원*84시간= 2,940,000
				2. 교육운영비	560	0	560	(성립전_1추)수업자료구입(목적) : 30,000원*2회= 60,000 운영용품구입 : 100,000원*5종*1회= 500,000
				7.[초]연극프로젝트	2,100	0	2,100	
				1. 운영수당	2,100	0	2,100	(성립전_1추)강사비(목적) : 35,000원*60시간= 2,100,000
				8.[초]창업프로젝트	1,900	0	1,900	
				1. 교육운영비	1,600	0	1,600	(성립전_1추)운영물품구입(목적) : 200,000원*8회= 1,600,000

2024학년도 세출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1회

(단위 : 천원)

사업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원)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2. 목적사업업무추진비	300	0	300	(성립전_1추)협의회비(목적) : 150,000원 *2회= 300,000
			9. [초]미래교육		1,000	0	1,000	
			1. 운영수당		960	0	960	(성립전_1추)강사비(목적) : 40,000원*24 시간= 960,000
			2. 교육운영비		40	0	40	(성립전_1추)간식비(목적) : 20,000원*2회 = 40,000
			10. [초]과학의날운영		600	600	0	
			1. 교육운영비		600	600	0	
			11. [초]유초연계이음학기시범운영비(초)		2,600	0	2,600	
			1. 일반수용비		400	0	400	(성립전_1추)교원연수비(목적) : 400,000 원*1회= 400,000
			2. 교육운영비		1,940	0	1,940	(성립전_1추)체험및행사준비물비(목적) : 194,000원*10회= 1,940,000
			3. 목적사업업무추진비		260	0	260	(성립전_1추)협의회비(목적) : 260,000원 *1회= 260,000
			12. [초]탄소중립실천운영		1,500	0	1,500	
			1. 일반수용비		50	0	50	(성립전_1추)교원연수비(목적) : 50,000원 *1회= 50,000
			2. 교육운영비		1,450	0	1,450	(성립전_1추)물품구입(목적) : 130,000원 *10회= 1,300,000 (성립전_1추)간식비(목적) : 50,000원*3회 = 150,000
			2. 현장체험학습활동		14,200	6,400	7,800	
			1. [초]수학여행		8,600	2,000	6,600	
			1. 여비		400	400	0	
			2. 교육운영비		8,200	1,600	6,600	(성립전_1추)차량임차료(목적) : 880,000 원*1대*2일= 1,760,000 (성립전_1추)숙박비(목적) : 184,500원*10 실= 1,845,000 (성립전_1추)식비및간식비(목적) : 61,000 원*33명= 2,013,000 (성립전_1추)입장료및교육활동비(목적) : 491,000원*2회= 982,000
			2. [초]현장학습		5,600	4,400	1,200	
			1. 교육운영비		5,600	4,400	1,200	입장료및체험료 : 10,000원*30명*4회= 1,200,000
			3. 동아리활동		700	0	700	
			1. [초]학교스포츠클럽활동		700	0	700	
			1. 학생복지비		700	0	700	(성립전_1추)학교스포츠클럽활동비 : 100,000원*7종= 700,000
			4. 진로활동		2,200	2,200	0	
			1. [초]진로체험활동		2,200	2,200	0	

2024학년도 세출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1회

(단위 : 천원)

사업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원)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1. 운영수당	0	400	-400	계절학교강사료 : -50,000원*2명*2시간*2회= -400,000
				2. 교육운영비	2,200	1,800	400	계절학교운영용품구입 : 20,000원*20종*1회= 400,000
4. 선택적 교육활동					43,626	18,890	24,736	
1. 방과후학교 운영					30,642	10,086	20,556	
1. 방과후학교운영					8,900	1,000	7,900	
1. [초]특기적성교육					6,500	1,000	5,500	
1. 교육운영비					6,500	1,000	5,500	(성립전_1추)교재및운영용품구입(목적) : 550,000원*10회= 5,500,000
2. [초]늘봄학교운영					2,400	0	2,400	
1. 교육운영비					280	0	280	(성립전_1추)교육용소모품구입(목적) : 28,000원*10종= 280,000
2. 비품구입비					2,120	0	2,120	(성립전_1추)컴퓨터외3종구입(목적) : 530,000원*4종= 2,120,000
2. 돌봄교실운영					8,876	520	8,356	
1. [초]돌봄교실운영					8,603	520	8,083	
1. 운영수당					320	320	0	
2. 교육운영비					5,008	200	4,808	(성립전_1추)오후돌봄간식비(목적) : 2,000원*8명*113회= 1,808,000
								(성립전_1추)운영용품구입(목적) : 150,000원*20회= 3,000,000
3. 비품구입비					3,275	0	3,275	(성립전_1추)환경개선비품구입(목적) : 1,091,600원*3종= 3,275,000
2. [초]돌봄전담사운영					273	0	273	
1. 기간제근로자인건비					270	0	270	(성립전_1추)대체인건비 : 15,000원*6시간 *1일= 90,000
								(성립전_1추)대체인건비 : 15,000원*6시간 *2일= 180,000
2. 기간제근로자법정부담금					3	0	3	(성립전_1추)4대보험기관부담금 : 3,000원 *1명*1월= 3,000
3.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12,866	8,566	4,300	
1. [유]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과정 운영					11,116	6,816	4,300	
1. 운영수당					6,720	6,720	0	
2. 교육운영비					4,300	0	4,300	(성립전_1추)특성화및놀이활동재료비(목적) : 60,000원*1종*12회= 720,000
								(성립전_1추)특성화및놀이활동재료비(목적) : 60,000원*3종*2회= 360,000
								(성립전_1추)특성화및놀이활동재료비(목적) : 50,000원*5종*5회= 1,250,000
								(성립전_1추)놀이환경개선비(목적) : 117,500원*2종*2회= 470,000
								(성립전_1추)간식비(목적) : 30,000원*5종 *10회= 1,500,000

2024학년도 세출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1회

(단위 : 천원)

사업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원)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3.기간제근로자법정부담금	96	96	0	
				2.[유] 유치원 방과후 급식지원	1,750	1,750	0	
				1.급식용식재료비	1,750	1,750	0	
			2.독서활동		9,484	7,804	1,680	
			1.독서활동운영		9,484	7,804	1,680	
			1.[초]도서구입		5,784	5,604	180	
				1.교육운영비	720	540	180	책꾸러미도서구입 : 30,000원*6명*1회= 180,000
				2.도서구입비	5,064	5,064	0	
			2.[초]도서관운영		3,700	2,200	1,500	
				1.운영수당	1,200	1,200	0	
				2.교육운영비	2,500	1,000	1,500	도서관자원봉사자물품및체험활동비 : 150,000원*10회= 1,500,000
			3.기타 선택적 교육활동		3,500	1,000	2,500	
			1.기타선택적교육운영		1,000	1,000	0	
			1.[초]기후변화교육		500	500	0	
				1.교육운영비	500	500	0	
			2.[초]민주시민교육		500	500	0	
				1.운영수당	500	500	0	
			2.다문화교육운영		2,500	0	2,500	
			1.[초]다꿈사랑방학교운영		2,500	0	2,500	
				1.운영수당	2,000	0	2,000	(성립전_1추)학생상담비 : 100,000원*5명*4회= 2,000,000
				2.교육운영비	500	0	500	(성립전_1추)다문화행사운영비 : 100,000원*5명= 500,000
			5.교육활동 지원		93,387	15,440	77,947	
			1.교무업무 운영		7,507	4,200	3,307	
			1.교무학사운영		7,507	4,200	3,307	
			1.[초]교무학사운영		1,700	1,700	0	
				1.교육운영비	700	700	0	
				2.일반업무추진비	1,000	1,000	0	
			2.[초]입학식 및 졸업식		4,700	2,500	2,200	

2024학년도 세출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1회

(단위 : 천원)

사업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원)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1. 교육운영비	4,600	2,500	2,100	행사용품구입 : 50,000원*42종*1회= 2,100,000
				2. 일반업무추진비	100	0	100	다과구입 : 20,000원*5종*1회= 100,000
			3. [초]환경정리		700	0	700	
				1. 일반수용비	700	0	700	청소용품구입 : 100,000원*7학급= 700,000
			4. [초]교원안심서비스지원		407	0	407	
				1. 일반수용비	407	0	407	(성립전_1추)교원안심서비스사용료 : 33,910원*12월= 407,000
		2. 생활지도운영			3,600	2,500	1,100	
		1. 학생생활상담지도			2,500	2,500	0	
			1. [초]위클래스운영		2,500	2,500	0	
				1. 운영수당	2,500	2,500	0	
		2. 학생안전교육			1,100	0	1,100	
			1. [초]안전교육		1,100	0	1,100	
				1. 교육운영비	1,100	0	1,100	(성립전_1추)차량임차료 : 550,000원*1대*1회= 550,000
								(성립전_1추)학생안전체험비 : 10,000원*55명= 550,000
		3. 학습지원실 운영			4,660	4,660	0	
		1. 방송실운영			300	300	0	
			1. [초]방송실운영		300	300	0	
				1. 교육운영비	300	300	0	
		2. 정보화실운영			4,360	4,360	0	
			1. [초]학교정보화지원		4,360	4,360	0	
				1. 일반수용비	400	400	0	
				2. 교육운영비	3,960	3,960	0	
		4. 교육여건 개선			77,620	4,080	73,540	
		1. 교육환경개선			77,620	4,080	73,540	
			1. [초]책·결상구입		2,000	0	2,000	
				1. 비품구입비	2,000	0	2,000	학생용책결상구입 : 100,000원*20조= 2,000,000
			2. [초]PC구입		2,140	0	2,140	
				1. 비품구입비	2,140	0	2,140	교원용PC구입 : 1,070,000원*2대= 2,140,000

2024학년도 세출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1회

(단위 : 천원)

사업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원)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3.[초]교실환경개선		73,480	4,080	69,400	
			1.일반수용비		28,568	1,080	27,488	방과후교실및학급교실난방설비(목적) : 25,400,000 12,700,000원*2실= 스마트교육환경개선(목적) : 2,088,000원 *1식= 2,088,000
			2.비품구입비		44,912	3,000	41,912	스마트칠판구입(목적) : -1,827,000원*4대 = -7,308,000 (성립전_1추)스마트칠판구입(목적) : 26,000,000 6,500,000원*4대= 칠판장구입(목적) : 1,305,000원*4개= 5,220,000 (성립전_1추)칠판장구입(목적) : 14,000,000 3,500,000원*4개= 틈새공간지원탁자외1종구입(경상) : 4,000,000 200,000원*2종*10개=
6. 학교 일반운영					121,705	109,930	11,775	
1. 학교기관 운영					50,528	47,828	2,700	
1. 부서기본운영					30,990	31,090	-100	
1.[초]교장실운영					6,250	6,350	-100	
1. 일반업무추진비					3,250	3,350	-100	접대용다과 : -20,000원*5종*1회= -100,000
2. 직책급업무수행경비					3,000	3,000	0	
2.[초]행정실운영					22,540	22,540	0	
1. 일반수용비					5,306	5,306	0	
2. 기타공공요금					350	350	0	
3. 여비					12,500	12,500	0	
4. 교직원복지비					384	384	0	
5. 일반업무추진비					500	500	0	
6. 비품구입비					3,500	3,500	0	
3.[초]교무부운영					2,200	2,200	0	
1. 일반수용비					1,700	1,700	0	
2. 일반업무추진비					500	500	0	
2. 병설유치원기본운영					19,538	16,738	2,800	
1.[유]유치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4,500	4,500	0	
1. 전기요금					4,200	4,200	0	
2. 기타공공요금					300	300	0	

2024학년도 세출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1회

(단위 : 천원)

사업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원)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2. [유]유치원운영		7,688	6,428	1,260	
			1. 일반수용비		6,328	5,228	1,100	실내환경정비 : 50,000원*6종*1회= 300,000
								환경정리용품구입 : 25,000원*5종*2회= 250,000
								청소용품구입 : 10,000원*10종*2회= 200,000
								직무연수경비 : 350,000원*1명*1회= 350,000
			2. 여비		960	800	160	관내외출장여비 : 20,000원*2명*4회= 160,000
			3. 학생복지비		400	400	0	
			3. [유]유치원하모니자원봉사자 운영		7,350	5,810	1,540	
			1. 운영수당		7,350	5,810	1,540	하모니자원봉사자활동비 : 10,000원*1명*154시간= 1,540,000
			2. 시설 장비 유지		69,377	60,302	9,075	
			1. 학교시설장비유지		69,377	60,302	9,075	
			1. [초]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21,780	19,780	2,000	
			1. 전기요금		14,000	12,000	2,000	전기요금 : 1,000,000원*2월= 2,000,000
			2. 상하수도료		700	700	0	
			3. 기타공공요금		7,080	7,080	0	
			2. [초]연료비		855	855	0	
			1. 연료비		855	855	0	
			3. [초]시설관리용역		17,180	15,980	1,200	
			1. 일반수용비		17,180	15,980	1,200	교실청소용역 : 300,000원*4실*1회= 1,200,000
			4. [초]시설일반관리		24,144	19,144	5,000	
			1. 기간제근로자인건비		1,000	1,000	0	
			2. 일반수용비		21,944	16,944	5,000	소규모수선비 : 1,000,000원*2회= 2,000,000 시설소모품구입 : 50,000원*20종*3회= 3,000,000
			3. 교직원복지비		1,200	1,200	0	
			5. [초]화장실관리		2,538	1,663	875	
			1. 일반수용비		2,538	1,663	875	화장실유지관리 : 87,500원*5종*2회= 875,000
			6. [초]당직관리		2,880	2,880	0	
			1. 일반수용비		2,880	2,880	0	

2024학년도 세출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1회

(단위 : 천원)

사업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원)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3.	학교운영 협력		1,800	1,800	0	
			1. 학교운영위원회운영		800	800	0	
			1. [초]학교운영위원회운영		800	800	0	
			1. 일반업무추진비		800	800	0	
			2. 학부모협력		1,000	1,000	0	
			1. [초]학부모교육		1,000	1,000	0	
			1. 일반수용비		750	750	0	
			2. 운영수당		100	100	0	
			3. 일반업무추진비		150	150	0	
		7.	학교 재무활동		1,500	1,500	0	
			1. 예비비		1,500	1,500	0	
			1. 예비비		1,500	1,500	0	
			1. [초]예비비		1,000	1,000	0	
			1. 예비비		1,000	1,000	0	
			2. [유]유치원예비비		500	500	0	
			1. 예비비		500	500	0	
세출합계					630,794	292,789	338,005	